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안전인증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조정하는 등 안전인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결함기록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등)

시행령 제15조 등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근거와 서식을 마련함

나. 안전인증 처리기간 연장사유 확대(안 제12조, 제27조 및 제28조)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특성상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면제대상 조정(안 제14

조 및 제30조)

기존의 변경인증 면제대상인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등)의 회로 등 변경에 대해 안전회로를 제외하고,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안전회로의 변경을 하지 않고 제어회로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면제함

라. 비상구출운전이 가능한 안전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48조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다중이용건축물의 안전관리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 비상구출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비상구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결함기록 보존 의무화(안 제69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검사 불합격사항 통보일 개선(안 제70조)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알려야 하는 날을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함

사. 기술교육·직무교육 방법 다양화(안 제73조)
승강기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 외에도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으로 다양화함

아. 중대한 고장을 발생케한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정(안 별표 3 및 별표 12)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일부 조정함

자. 가중된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등)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함

차. 승강기부품 모델의 구분기준 개선(안 별표 4)

비상통화장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어반, 과속역행방지장치에 대해 모델 구분기준을 개선함

카. 기술교육·직무교육의 재교육 시간 완화(안 별표 13)

승강기 기술교육 및 직무교육에 대해 교육을 받는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에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업 등록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2호서식)

제조·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 처리기간을 14일로 연장함

파.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등 정비(안 제8호서식 등)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식, 정기심사 신청서식에 대해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안전검사 신청서식에 대해 법령 본문과 같이 처리기간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로 하며, 수시 검사 신청 시 건축사항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하.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 표시(안 별지제27호서식)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차기 검사기간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 영 제15조제8항, 제24조제9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특성상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또는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제14조제5항제1호 중 “회로”를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5.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6.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3조의 제목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정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5항제1호 중 “회로”를 “회로(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수입업자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력, 브레이크, 안전회로를 제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5. 승강기의 설계·제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6.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화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8조제5호 중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승강기”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로 한다.

제70조제3호 중 “불합격한 날”을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집합교육”을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으로 한다.

제82조제1호 및 제2호 중 “2019년 7월 1일”을 각각 “2022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란 가목 중 “개문출발방지수단”을

“문열림출발방지수단”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3호가목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30일”을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30일”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항 관련 서류(변경허가서, 건축도면, 건축사항 관련 기술서류를 포함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제27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처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변경인증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제5항 또는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변경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8호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4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여 안전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8호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이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5호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바. 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6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 종류 ○ 적용하중
	2) 과속조절기	○ 종류 ○ 정격속도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4) 랑치밸브	○ 종류 ○ 밸브크기
	5) 비상통화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연결 국수(局數)
	6) 상승과속방지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7) 완충기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8) 유량제한기	○ 종류 ○ 밸브크기
	9) 이동케이블	○ 종류 ○ 정격전압 ○ 케이블 구조 ○ 선심수/단면적
	10) 제어반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한다) ○ 정격전류 ○ 인버터 용량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한다)
	11) 추락방지안전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적용하중
	12) 출입문 잠금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정격전류
	13) 출입문 조립체	○ 종류 ○ 개폐방식 ○ 문짝 크기 ○ 재질 ○ 방화유무
	14) 매다는 장치	○ 종류 ○ 소선강도 ○ 공칭직경 ○ 소선 수 ○ 재질

나. 에스컬레이터	1) 과속역행방지장치	○ 종류 ○ 적용하중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정격하중
	3) 구동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4) 디딤판	○ 종류 ○ 공칭폭
	5) 디딤판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 롤러 재질
	6) 제어반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한다) ○ 정격전류 ○ 인버터 용량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한다)

2.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운반구(카) 무게 ○ 출입문 개폐구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운반구(카) 무게 ○ 출입문 개폐구조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2) 무빙워크	○ 종류 ○ 정격하중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다. 휠체어리프트	1) 전기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구동방식
	2)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구동방식

	3)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구동방식 ○ 정격하중
--	---------------	--	--

비고

1. 모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기본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말한다.

나. “파생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기본모델에서 파생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6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부품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5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부품안전인증 표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품안전인증 취소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8호	부 품 안 전 인 증 표 시 등 사용금지 2개월	부 품 안 전 인 증 취 소	—
차.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9호	부 품 안 전 인 증 취 소	—	—
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 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0호	부 품 안 전 인 증 취 소	—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6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변경한 경우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 개월	인증 취소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 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승강기안전 인증 취소	—	—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및 기간(제52조제1항 관련)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하 “비상구출운전”이라 한다)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일
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일
별표 9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1일

비고: 별표 9 제2호 또는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비상구출운전에 관한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5호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업 전부정지 4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6호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업 전부정지 4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7호	사업 전부정지 2개월	등록취소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8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	사업 전부정지	사업 전부정지

			1개월	2개월
--	--	--	-----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교육

교육 내용	교육시간
가. 승강기 설계이론 나.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다. 승강기 설치공법 라.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마.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바.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8시간

2. 직무교육

교육 내용	교육시간
가. 부품안전인증 실무 나.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다. 설치검사 실무 라. 안전검사 실무 마.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바.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사. 승강기 관계법령 아.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8시간

비고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고 다음 주기의 교육을 받는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 총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	—
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5호 및 영 제46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차수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다.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 구분	승강기 [] 승강기 제조업 [] 승강기 수입업	
		승강기부품 [] 승강기부품 제조업 [] 승강기부품 수입업	
자본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4.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능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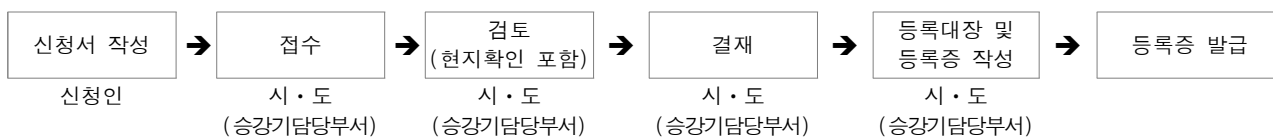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주소		
과징금 부과내역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과징금 부과금액		
	납부기한		

신청사유

신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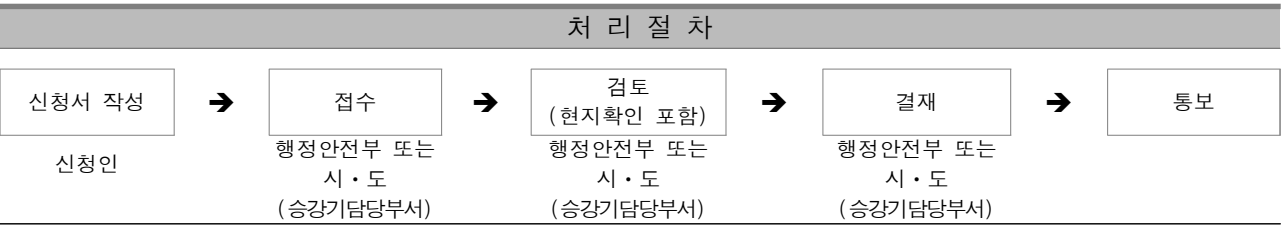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제24조제9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제조업자 [] 수입업자	
부품안전 인증내용	승강기안전부품명	부품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 파생모델 등록 [] 부품 변경 [] 상호 변경 [] 주소 변경 [] 그 밖의 변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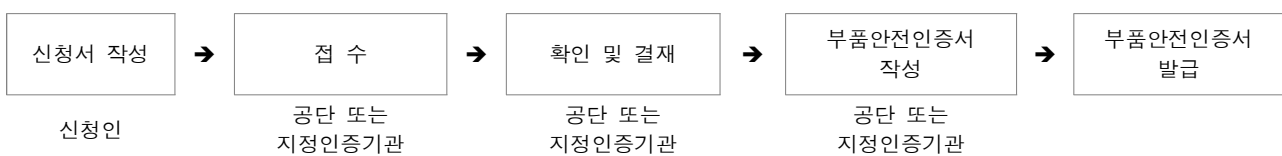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부품정기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제조업자 [] 수입업자	
부품안전 인증내용	승강기안전부품명	부품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2.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도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확인 및 결재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심사결과 작성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심사결과 통보

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또는 2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제조업자 [] 수입업자		
	신청 구분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인증 내용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변경내용	[] 파생모델등록, [] 부품변경, [] 상호변경, [] 주소변경, [] 그 밖의 변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붙임서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공단	→	확인 및 결재 공단	→	승강기안전인증서 작성 공단	→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

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인 구분	[] 제조업자 [] 수입업자	
모델 승강기 안전 인증내용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승강기안전인증번호
	기본모델명 (필요시 별지 사용)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세부내용 (필요시 별지 사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한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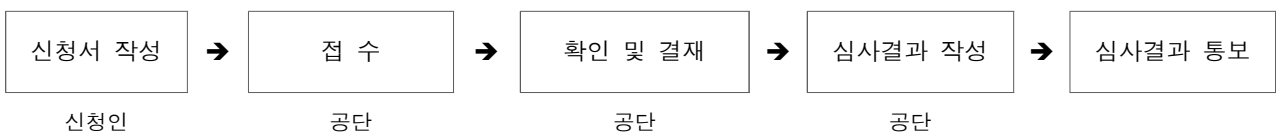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도서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

105mm × 74mm (백상지 120g/m²)

[안 내]

이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 또는 잘 붙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발급받은 즉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팩스번호	
	등록구분	[] 고속 승강기 [] 중저속 승강기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귀하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영 제33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법 제4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능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본인은 민원(사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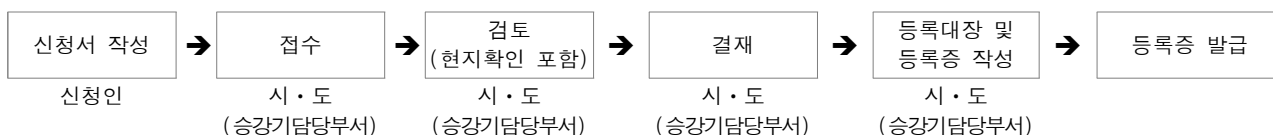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④ · ⑤ (생 략)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 · 승강기부품 · 절연재질의 변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질 변경의 경우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 회로(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 · 수입업자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회로의 변경 없이 제어회로만을 변경하는 경우

5. 승강기안전부품의 설계 · 제

<신 설>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정성
에 대한 자체심사) ①·② (생
략)

제27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 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조와 관련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
하는 경우

6.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
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
화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
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에 대한 자체심사) ①·② (현
행과 같음)

제27조(모텔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

<신 설>

④ · ⑤ (생략)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를 마치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만큼

2.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기준 및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재난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사
유가 인정되는 기간만큼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1. 승강기에 사용된 변압기 2차
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또
는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회로
· 승강기부품 · 절연재질의 변
경 또는 연소방지를 위한 재
질 변경의 경우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 회로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안
전회로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3. 제조공장의 변경 없이 제조
· 수입업자의 대표자만을 변
경하는 경우

4.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동
력, 브레이크, 안전회로를 제
외한 회로를 변경하는 경우

5. 승강기의 설계 · 제조와 관련
된 규격과 재질의 변경 없이
설계 · 제조 관련 도면을 수정
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이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6.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를 한
국산업표준(KS)에 따라 표준
화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
능을 갖춘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

-----.

1. ~ 4. (생략)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7. (생략)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관리주체(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

1. ~ 4. (현행과 같음)

5. -----

---승강기-----

6.·7. (현행과 같음)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

결함확인장치 등에 기록된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

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2. (생략)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② (생략)

③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④·⑤ (생략)

제8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자격요건: 2019년 7월 1일
2. 제52조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2019년 7월 1일

1. 2. (현행과 같음)

3. -----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 등-----.

④·⑤ (현행과 같음)

제82조(규제의 재검토) -----

-----.

1. ----- 2022년 7월 1일
2. ----- 2022년 7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4295